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32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진주시 D 대 102㎡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7. 11. 28. 접수 제68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186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15. “C은 원고에게 40,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모 E은 F과 혼인하여 자녀로 G, H, I, C 및 피고를 두었고, 진주시 D 대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17. 10.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G, H, I, C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681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이 사망함에 따라 C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약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약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C이 사건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C이 F(부친) 사망시 상속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단독상속받은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의미로 이 사건 분할협약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